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정세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2020.5.19. 공포, 2021.5.20. 시행)으로 신설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등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며, 대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에 관한 현황 자료 미제출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안 제53조의8 제1항 개정)

- 1)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 2)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사적분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분쟁조정 대상으로 함.

나. 처분시효 관련 조사 개시일 의미 구체화(안 제54조의2 신설)

- 1) 법 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처분시효의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2)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 인지사건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조사 개시일을 명확히 함.

다. 보관조서 기재사항 규정(안 제56조 제3항 신설)

- 1) 법 개정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입수된 자료와 관련한 보관조서 작성·교부 의무가 신설되면서 보관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함.

라. 조사공문 기재사항 규정(안 제56조 제4항 신설)

- 1) 법 개정으로 조사공문 교부 의무가 신설되면서 조사공문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함.

마.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 구체화(안 제58조의3 신설)

- 1) 법 개정으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자료의 열람·복사요구권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해당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를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로 규정함.

바.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안 제64조의5 개정)

- 1)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세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본이자율과 가산 이자율(기본이자율의 1.5배)로 이원화 된 바, 공정위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2)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함.

사.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64조의7 제1항 제8호 신설)

- 1) 대기업집단은 자신이 보유·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관한 현황자

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제출해야 함.

- 2) 대기업집단은 사익편취금지 규정 등의 적용 회피를 위해 실제로는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일명 위장계열사)처럼 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치 진행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반혐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조사 개시일) ① 법 제4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진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단서로 하여 개시된 경우 : 신고접수일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가 신

고 없이 개시되거나, 신고 이전에 개시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날에 법 위반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제56조제2항 중 “영치는”을 “일시 보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되는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진술에 관한 사항

제57조의2제1항제2호 중 “영치된”을 “일시 보관된”으로 한다.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자료열람요구 등) 법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신고인

2. 법 제56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4조의5 중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제43조의3제2항 본문
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한다.

제64조의7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누락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8제1항, 제64조의5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4(조정 등) ① 법 제48조의6(조정 등)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4(조정 등) ① -- ----- ----- ----- -----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이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3조의8(조정 등) ① 법 제48조의7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위반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3조의8(조정 등) ① ----- ----- ----- -----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 위의 금지)제1항제7호----- -----.
1. 법 제23조제1항제7호	<삭 제>
2. 별표 1의2 제1호가목	<삭 제>
3. 별표 1의2 제2호다목 또는 라 목	<삭 제>

4. 별표 1의2 제3호가목(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
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
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
가 있는 행위만 해당한다)

②·③ (생략)

<신설>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조사 개시일) ① 법 제
4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
사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
진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단서
로 하여 개시된 경우 : 신고접
수일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
사가 신고 없이 개시되거나,
신고 이전에 개시된 경우 : 법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

① (생략)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신설>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날에 법 위반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일시 보관은 -----

-----.

③ 법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되는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생략)

② (생략)

<신설>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진술에 관한 사항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일시 보
관된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자료열람요구 등) 법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신고인

제64조의5(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7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② ~ ⑦ (생략)	2. 법 제56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4조의5(환급가산금 요율) --- ----- -----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 -----.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누락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②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305